

대전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나107966(본소), 2019나10797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석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발

담당변호사 김동환

변 론 종 결 2021. 2. 25.

판 결 선 고 2021. 3. 25.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가단1633(본소), 2018가단 215210(반소)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본소 청구 확장 및 피고(반소원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반소피소)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7,44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9.부터 2019. 5.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사이의 2017. 9. 11.자 제품공급구매계약서에 의해 발생한 손해금 57,444,100원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9. 11.자 제품공급구매계약서에 의해 발생한 손해금 52,221,909원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를 확장하였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5,444,1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 심판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9. 11.자 제품공급구매계약에 의해 발생한 손해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위 제품공급구매계약에 기해 원고에게 지급한 선금금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을 제외한 차액

57,444,100원의 반환과 위약금 3,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57,444,1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위약금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였고, 위 57,444,100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고 원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57,444,100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만이 심판범위에 속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인정되는 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의 ‘피고’는 모두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의 ‘평택 C’은 ‘평택 I’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그런데 원고와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 체결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른 공사 및 물품공급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와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는 원고가 데려온 F를 포함시켜 F가 이 사건 구매계약과 제1확약서에 따른 상가 분양계약 체결 관련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원고와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구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F는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금 3,300만 원을 B에 납부하였다.

라.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는 위 3자간 합의 직후 시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F와의 물품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F에게 3,300만 원을 반환한 다음 제3의 업체와 공사 및 물품공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미 시공한 공사이행분의 기성분을 18,555,900원으로 평가하여 2017. 11. 30.경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선급금 7,600만 원과의 차액분 57,444,1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 뒤에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 2019. 12. 17. 대전지방법원 2019회합5053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위회생법원은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 '[인정근거]란'의 '을 제1 내지 7, 9 내지 14호증'을 '을 제1 내지 5, 9 내지 14호증'으로 고쳐 쓴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 156실에 대한 에어컨 배관공사를 완공하였고, 실내기 및 실외기 각 4대를 샘플세대에 설치하였는데, 그 시공분의 공사금액이 선급금을 상회하여 이를 선급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이 사건 구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매계약은 원고와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사이에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행한 부분의 기성금을 18,555,900원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인정하고 B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7,600만 원에서 위 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원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소송을 수계한 피고에게 선급금 7,600만 원에서 기성금 18,555,900원을 뺀 57,444,1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B의 직원 G와 J가 원고를 겁박하여 불안감 및 공포감에 휩싸인 채 '배관공사는 마무리 하였고, 어차피 선급금을 정산하면 반환할 잔여금은 없다.'고 생각하여 제2확약서에 서명하였고, 2018. 11. 2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제2확약서상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제2확약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적극적으로 제2확약서 내용과 같은 합의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57,444,100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과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차액인 57,444,1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장 송달일인 2018. 7. 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5. 2.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 바, 이 법원에서의 본소 청구 확장 및 피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김매경, 판사 이정호, 판사 신옥영